의안 번호

1831

#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1. 8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11. 8.(월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12. 3.(금)

#### 2. 제안이유

- 가. 변화된 인터넷 환경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민과의 소통이 증대됨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관리·운영하는데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,
- 나. 소셜미디어 게시물 관리, 이용자 행사 참여 실시 등 소셜미디어를 효 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  - ※ 현재 소셜미디어 5개 운영 중(블로그, 페이스북, 유튜브, 인스타그램, 카톡채널)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소셜미디어 행사 운영(안 제6조)
  - 적극적인 구정 참여·홍보·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한 이용자 참여 행사 운영
  - 행사 참여자에 대한 경품 제공 등
- 나. 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(안 제7조)
  - 기자단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음
- 다. 소셜미디어 운영 위탁(안 제10조)
  -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셜미디어 업무의 민간 위탁 사항
- 라. 포상, 개인정보 보호(안 제11조 ~ 제12조)

#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제22조
- 나.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블로그, 트위터,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고, 구민 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
- 최근 홍보 환경도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구정 홍보와 다양한 여론 수렴 및 건전하고 체계적인 소 셜미디어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
-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사항은 없음. 다만, 최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게시물 등의 관 리・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공직선거법

- 제112조(기부행위의 정의 등) ①이 법에서 "기부행위"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·단체·시설에 대하여 금전·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,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.
    - 1. ~ 3.(생략)
    - 4. 직무상의 행위

가.(생략)

나.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·방법·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